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 1910년대 군주제와 공화제를 중심으로 -

전종익**

목 차

- I. 서
- II. 국권회복운동과 국민주권론
- III. 군주제와 망명정부의 수립
 - 1. 십삼도의군의 망명정부 수립계획
 - 2. 신한혁명당의 고종황제 추대
- IV. 공화제 정치체제의 도입
 - 1.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무형국가론
 - 2. 대한광복회의 공화혁명론
 - 3. 대동단결선언의 공화정부수립론
- V. 결론

[국문 요약]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905년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치,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등을 거치며 대내외적인 통치권을 상실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마침내 1910년 강제병합으로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진영은 국권회복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동이념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주와 대비되는 '국민'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주목하여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였다.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인 세력들 중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근왕주의자들은 십삼도의군이나 신한혁명당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강제병합 이후 미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고, 이어 국내외에서 중국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대한광복회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에

* 이 논문은 2017.4.22 개최된 법사학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법사학회 회원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2017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해당한다. 이러한 공화제의 흐름은 해외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대동단결선언’에서 이론적, 정치적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공화제 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권회복을 넘어 주권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변화하는 이론적 변화가 필요하였고, 독립운동진영의 세대교체와 중국 신해혁명 그리고 미주 동포들의 공화제 정치체제의 수용 등이 1917년 이후 공화제 정치체제가 독립운동진영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 주요한 요인들이었다.

[주제어] 공화제, 군주제, 국민주권, 혁명, 신해혁명

I. 서

1899.8.17. 반포된 大韓國國制는 제2조에서 大韓國이 專制정치임을 밝히면서 제3조에서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한 君權을 享有하시옵나니 公법에 謂한바 自立政體이니라”라고 규정하여 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국국제는 稱帝와 대한제국의 선포를 완성하고 군주주권론을 법제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헌정사적으로는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으로 평가된다.¹⁾ 이로부터 대한제국은 1910.8.29. 국권상실까지 헌법의 변경없이 전제군주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3·1운동 직후인 1919.4.11. 선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의 헌법문서인 大韓民國臨時憲章은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에 의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²⁾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된 후 독립될 때까지 수차례 헌법이 개정되었지만 이와 같은 민주공화제의 틀은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1948년 헌법 전문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대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이라고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이라고 명시하고 있어,³⁾ 위 대한민국임시헌장 규정이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

1)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17), 76쪽.

2) 대한국국제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은 정중섭, 『한국헌법사문류』(박영사, 2002), 19, 30쪽에 의하였다.

3) 헌법학자들은 헌법전문 위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민주국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거나(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 상(박영사, 2009), 261쪽),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헌법적 연원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헌정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대 국가의 성립 이래 줄곧 王政체제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국국제의 반포부터 대한민국임시헌장 성립시인 1919년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⁴⁾로 정치체제를 변경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변동없이 이를 계속하여 유지해온 점이다. 이는 위 기간동안 급격한 정치체제의 변동을 뒷받침한 치열한 사상적, 이론적 논의들이 존재하였으며, 결국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어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들과 배경, 구체적인 모색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제의 근원을 찾아가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헌정사 연구에서 이 기간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 시기에 대한 기존 헌정사 연구들을 보면, 대한국국제에 대한 서술에서 3·1운동으로 인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으로 바로 넘어가거나,⁵⁾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로 설정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피압박과 그에 대한 저항시기로서 3·1운동을 정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진다고 개략적으로 서술하기도 하며,⁶⁾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점으로 사실상의 지배권을 잃었으나 규범적인 국가성이 유지되었고 3·1운동이라는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로 공화국헌법이 성립되었다는 큰틀의 헌법이론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⁷⁾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국헌법문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영향관계를 추

의 법적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자주독립적·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거나(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128쪽),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이 임시정부헌법의 기본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이념적 차원에서의 계승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여(양건, 『헌법강의』(법문사, 2011), 102쪽)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제 이념의 계승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군주제와 공화제는 제도적인 면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일단 실제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원수로서 군주가 인정되는 체제를 군주제라 하고, 군주이외의 국가원수가 존재하는 체제를 공화제라 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 자체만으로 민주주의의 구현 여부 및 헌법에 의한 권력제한 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어(예를 들면, 민주공화제)를 사용한다.

5) 김철수, 『한국헌법사』(대학출판사, 1988), 17~18쪽; 김영수, 『한국헌법사』(학문사, 2000), 213쪽.

6) 한태연 외 4인, 『한국헌법사』 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36~39쪽.

7) 이현환,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31(2010), 13~16쪽.

적하여 그 독창성을 인정하거나,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제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변화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3·1운동이라는 국민주권선언으로 민주공화제가 이의없이 채택되었다며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⁹⁾

반면 정치학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헌정사적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07년 황제퇴위사건을 계기로 민권론자들이 급진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신한혁명당의 망명정부 수립 시도를 거쳐 대동단결선언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3·1운동을 거쳐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로 이어졌다고 하거나,¹⁰⁾ 독립선언문과 대동단결선언으로 초기 독립운동에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도입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이 이념이 구현되었다고 보는 등¹¹⁾ 공화주의 또는 공화제의 도입과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연구를 볼 수 있다. 특히 1905~1910년 입헌군주제론이 수용되었고 신민회와 미주의 공립신보에서 국민국가론과 국민주권론이 제시되었으며 1911년 중국혁명의 영향을 거쳐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으로 공화제가 채택되었다는 연구¹²⁾는 공화제가 소개되어 수용될 때까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 일제 강점기 공화주의와 復辟주의의 대립을 살펴본 연구로서 3·1운동 이전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복벽운동과 이후 있었던 대동단의 왕정복고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이 시기를 대상으로 정치체제의 구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공화주의 또는 복벽주의라는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어 의미가 크기는 하나 일면적인 고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 헌정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대한제국 성립 이

8) 신우철, 『비교헌법사』(법문사, 2008), 290~301쪽

9)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2009), 179~180쪽.

10)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40(5)(2006), 146~153쪽.

11) 이상훈,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 이념」,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4호(2012), 199~207쪽.

12)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2008), 305쪽.

13) 박현모,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2007), 66~72쪽.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정치체제 구상들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개별 사건과 논의들에 대해서는 그간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정사적으로 군주제와 공화제를 균형있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시기 있었던 신문과 잡지의 글들을 통해 기존 군주주권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는 모습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독립운동단체들의 정치체제 구상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군주제의 망명정부 수립과 공화제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 국권회복운동과 국민주권론

조선말의 실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문물을 접하면서 서구정치체제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식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최한기(1803~1879)의 『地毬典要』를 보면 영국의 입헌군주정이 전제군주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제와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¹⁴⁾ 개항 이후 서구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은 개화지식인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된 朝士視察團에 의하여 군민공치, 군주독재, 귀족정치, 공화정치 체제가 소개되었고,¹⁵⁾ 한성순보를 통해 立憲政體로서 ‘君民同治’와 ‘舍衆共和’ 정치체제가 소개되었으며,¹⁶⁾ 인민주권과 헌법에 해당하는 章程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전해진 정보들을 단순히 소개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의 실정에 바탕을 둔 실천적인 주

14) 최한기, 『地毬典要』, 『增補 明南樓叢書』 四(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권 8, 英吉利國, 北亞墨利加米利堅合衆國.

15) 민중목, 『聞見事件』, 허동현 편,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12권(국학자료원, 1999), 110쪽.

16) 『漢城旬報』 1884.1.30. 歐米立憲政體. 이하 한성순보 자료는 동방미디어(<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88#35>)를 통해 검색한 것임(최종방문 2017.6.16).

17) 『漢城旬報』 1884.2.7. 譯民主與各國章程及公議堂解.

장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대체로 대한제국기 지식인들이 잡지나 학회지에 기고한 정치체제에 대한 글들을 보면 國體와 政體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 및 전제정치, 입헌정치, 공화정치의 차이를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정체체제를 비교하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¹⁸⁾ 나아가 1905년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치,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등을 거치면서 대내외적인 통치권을 상실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서구정치체제의 소개에 머물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당시의 논의들을 보면 대체로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인민이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君民共治 체제가 주장되었다. 입헌군주제는 실력양성과 부국강병을 통해 국권회복을 추구하는 문명개화론자들 뿐 아니라 실학을 계승한 개혁론자인 해학 이기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¹⁹⁾ 당시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군주제의 변경없이 이를 바탕으로 개혁을 해나가려고 한 것은 이들이 대체로 유교를 기반으로 하여 서구학문과 문명을 받아들인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였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지식과 능력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²⁰⁾ 당시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체제에서 군주제의 부정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였던 현실적인 이유도 한계로 작용하였으며,²¹⁾ 대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지식들이 일본을 통해 전달되었고 당시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점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²²⁾

1907년 이후 국권회복운동진영이 대체로 군주제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18)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지식산업사, 1994), 98쪽.

19) 위의 책, 99, 207쪽.

20) 박찬승, 위의 글, 325쪽.

21) 한인섭, 위의 글, 179쪽.

22) 예를 들면 1908년 출간된 유치형과 김상연의 ‘헌법’ 교과서는 일본헌법학자 穂積八束 및 副島義一の 강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國分典子, 「俞致衡과 穂積八束 - 한일초기헌법론의 비교」, 『법사학연구』 제23호(2001), 68쪽. 특히 유치형은 교과서의 서문에서 “我邦에 在 亨야는 君主專制의 世襲國體” 밝히고 “專制君主國觀念에 最適 德逸及日本國憲法을 講究”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형, 『憲法(復刊판)』(아세아문화사, 1981), 1~2쪽.

국권상실의 원인이 대한제국의 황제와 관료들에게 있는 상황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동력을 이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점차 진정한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의 각성과 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중심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국민주권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이상설의 1909. 3. 31. 신한민보 논설인 “皇室非滅 國之利器”이다.²³⁾ 이 글은 그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후 공식적인 외교활동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 순방을 마치고 1908. 2.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지역 한인사회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작성된 것이다.²⁴⁾ 이상설은 비록 1896년부터 외국어와 신학문을 공부하였다고는 하나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관료 출신이었다.²⁵⁾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파견되기 이전의 활동들이 전통적인 유교적 관료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헤이그 사행 이후의 활동들은 전혀 새로운 활동의 지평을 나타내고 있다.²⁶⁾ 위 글은 이상설의 이와 같은 새로운 독립운동 활동의 사상적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皇室非滅 國之利器”에서 이상설은 ‘인민’과 ‘임금’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²⁷⁾

“임금과 나라를 분간치 못하면 임금을 욕되게 하며 나라를 망하게 함을 면치 못하는지라. 무릇 임금은 나라를 위하여 둔 것이요, 나라를 임금을 위해 세운 것이

23) 이하 신한민보 등 신문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를 통해 검색한 것임.

24) 윤병석, 「이상설의 遺文과 이준·장인환·전명운의 의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988), 13쪽.

25) 이상설은 일찍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20세가 넘으면서 이미 유학의 큰 학자로 칭송을 받았고 25세 때인 1894년 조선왕조 최후의 과거인 甲午文科 丙科에 급제하여 승정원 비서관, 성균관관장, 한성 사범학교교관, 학부협관, 의정부참찬 등을 거쳤다. 이상설의 생애에 대한 설명은 윤병석, 『李相高傳』(일조각, 1984), 271~277쪽에 정리되어 있는 연보에 의하였다.

26) 박민영, 「국치 전후 이상설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2007), 359쪽.

27) 윤병석, 위의 글(1988), 14쪽.

아니니, 이러므로 임금이란 것은 인민이 자기의 사무를 위한 공편된 종일 뿐이요, 인민이란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저의 직역을 진력하게 하는 최초의 상전이라. 종된 임금이 사무와 직역을 다하지 못할지면 상전된 인민의 책망을 도망키 어려우니 (...) 나라는 임금의 물건이 아니오 백성의 물건인 것을 표창하였으니 (...) 나는 또한 주권이 있는 곳에 임금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주권이 없는 곳에는 임금이 또한 있지 아니한 줄로 생각하노라. (...) 우리 인민은 임의 나라와 임금을 두 물건으로 분별치 못하며 또한 주권이 없는 곳에는 임금이 없는 줄을 알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여도 임금을 복종함만 생각하며 주권이 없더라도 임금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상설은 이러한 국민주권론의 근거로서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살펴본 그들의 정치체제와 함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의 잘못된 생각은 결국 “일본놈이 한국인민은 그 임금만 내가 명령하면 인민은 자연 내가 명령할지며 임금만 내게 복종하게 하면 인민은 자연 복종할”것으로 생각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그가 국권침탈 과정에서 군주주권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서구에서의 경험과 결합되어 국민주권론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역할을 자각하는 모습은 같은 시기 국내의 新民會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민회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로운 ‘民’ 개념을 근거로 하여 인민이 臣民에서 新民으로 환골탈태함으로써 국가건설의 주역으로 활동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⁸⁾ 이와 같은 신민회의 기본적인 인민관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신민회의 기관지인 대한매일신보에 1910. 2.22.부터 3.3.까지 게재된 논설인 신채호의 “20世紀新國民”이다.

신채호는 이 글에서 20세기의 국가경쟁은 그 원동력이 1, 2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국민전체에게 있으며 그 승패의 결과 역시 국민전체에게 달려있다

28) 이승현, 「신민회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김기승 외 6인, 『국가건설사상』 II(인간사랑, 2006), 269~270쪽.

고 하였다.²⁹⁾ 그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제국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동양의 중국과 인도 문명은 정체 또는 쇠퇴하였으나 서양은 암흑시대가 가고 황금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專制封建의 舊陋가 去하고 立憲共和의 福音이 遍하여 國家는 人民의 樂園이 되며 人民은 國家의 主人이 되”었다고 하여³⁰⁾ 서양제국의 발전이 입헌공화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덕인 平等, 自由, 正義, 毅勇, 公共을 신국민의 기초정신으로 삼을 것³¹⁾과 무력의 필요성,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정치에 대하여는 韓人의 정치사상과 정치능력이 결핍한 것은 선천적 성질이 아니라 “專制의 毒이 極하며 經濟의 困이 毒하며 智識이 乏한 等 所以”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망국의 이유에 국토가 좁고 국민이 적은 경우 망할 뿐 아니라 “國民的 國家가 아닌 國(立憲國이 아니오 1, 2人의 專制하는 國)과 世界大勢를 逆하는 國은 必亡”인데 한국은 국토와 국민이 충분하므로 20세기 국민으로 거듭난다면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이와 같이 신채호는 입헌공화제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각성을 주장하였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실천적인 주장으로서 專制가 아닌 立憲國을 주장하고 있어 입헌공화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신문의 1910.6.19.자 논설인 ‘국민의 권한’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은 우선 국민이 있으면 주권이 생겨난다고 하고 “國家는 衆民의 團成體오 主權은 衆民의 合成力”이라 설명하여 주권이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기원함을 주장하면서, “君主의 國은 君主의 主權이 有하고 民主의 國은 民主의 主權이 有” 한 것은 “各其團體力을 隨하여 異同이 有하다”고 하여 근본적인 주권과 정치제도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는 권력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我韓은 元來로 君主가 主權을 掌握하던 國이라”고 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의 자강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군주제를 인정

29) 『대한매일신보』 1910.2.22.

30) 『대한매일신보』 1910.2.23.

31) 『대한매일신보』 1910.2.25~2.26.

32) 『대한매일신보』 1910.3.3.

하는 전제하에 새로운 주체로서의 국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권침탈을 전후하여 발생한 국민주권론으로의 인식변화는 군주제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체도로 지향한 것은 입헌군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설의 위 논설에서도 군주제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들도 이러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조소앙이 일본유학시절³³⁾인 1909년 11월 대한흥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회회원들의 단결과 조국을 위한 임무를 당부하기 위하여 작성한 “會員諸君”³⁴⁾에서도 이러한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조소앙은 이 글에서 재일유학생들의 상황을 재일청국유학생들과 비교하고 이어서 재미동포들의 활동을 언급하였다. 재미동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방에 기관들을 세우고 “過去 韓半島의 救急의 策을 講究하며 未來 韓帝國의 建立을 是圖”하여 국민회를 구성하고 新韓民報와 新韓國報를 만들어 보급함은 2천만이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어서 그러한 활동의 기본취지와 활동에 대하여 “一曰 專制政治의 打破요, 二曰 自由平等의 主唱이오, 三曰 國權回復의 計劃이오, 四曰 博愛性의 實踐이라. 以上 四個好題目을 標榜하여 自由活動을 試하는 同胞는 眞實로 感謝하고 眞實로 欽慕하겠도다”라고 하여 이를 재일유학생들이 향후 활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대한국국제외의 기본체제인 전제군주제는 타과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자유·평등이라는 민권에 기반한 체제가 국권회복 이후의 국가정치체제로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전히 ‘韓帝國’의 건립을 언급하고 있어 위의 내용과 결합하면 목표로 하는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권상실을 전후하여 생성된 국민주권론은 정치체제의 면에서 보면 군주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입헌군주제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었고, 군주제를

33) 조소앙은 15세까지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16세부터 18세까지 성균관에서 수학한 이후 1904년부터 8년간 동경부립 제일중학교와 명치대학 법과에서 수학하였다. 김기승,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과정」, 『한국사학보』 3·4(1998), 168쪽.

34) 『소앙선생문집』 하(삼균학회, 1979), 220~226쪽.

폐지하고 공화제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이론적으로 국권상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³⁵⁾과 국권회복을 주장하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이전 상태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는 군주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국민주권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히 일제의 불법강점과 국권회복을 넘어서 주권의 소재를 변경하는 이른바 ‘혁명론’이 널리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군주제 폐지와 공화제 수립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은 독립운동진영의 활동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Ⅲ. 군주제와 망명정부의 수립

1. 십삼도의군의 망명정부 수립계획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당하고 한반도내에 헌병경찰체제하의 무단통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이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여 만주와 연해주,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고 국내외의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고종황제 등 대한제국의 수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국내에 존재하는 대한제국 정부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의 수립이다. 망명정부란 타국에 정복되거나 국내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부수뇌부가 타국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정부를 조직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며 오랫동안 실효적 통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

35)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이래 일본과의 각종 조약체결의 불법성 주장은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고종이 특사들에게 수여한 위임장이나 친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윤병석, 위의 책(1984), 58~85쪽 참조.

면서 망명국 또는 몇 개의 외국에 의하여 정통정부로서 승인되는 정권을 의미한다.³⁶⁾ 이러한 망명정부가 수립되면 정통성 있는 정부로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결집하기 용이하고 주재국 등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국권회복운동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권침탈 초기부터 망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해외에 망명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연해주에서 이루어진 유인석, 이범윤, 이상설 중심의 ‘十三道義軍’ 결성과 고종의 망명시도였다. 유럽 중심의 위정척사론자들은 일찍부터 항일의병투쟁에 가담하여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국권침탈 이후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의병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연해주 역시 그러한 무장항일투쟁의 주요한 기지였고, 러일전쟁과 1907년 군대해산을 계기로 무장투쟁세력은 확대되어 국권상실을 전후하여 4, 5천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는 최재형, 이범윤, 유인석, 이상설, 홍범도 등이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³⁷⁾ 1908년 말 이후 연해주 의병의 지도자들은 연해주와 북간도의 모든 의병을 단일군단으로 재조직하고 작전과 지휘를 체계화하여야 항전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한인들 및 러시아 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조직의 통합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1910. 6. 21. 러시아 안의 의병을 통합하여 결성된 것이 십삼도의군 조직이다.³⁸⁾ 십삼도의군은 장차 국내를 망라하여 전국적으로 장정들을 의병으로 편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고을마다 임원을 두어 道총재가 이들을 지휘하고 도총재들을 다시 十三道都總裁가 지휘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편성을 위해 우선 都總裁 유인석 명의로 ‘通告十三道大小同胞’이라는 포고문을 국내외에 발송하여 참

36)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삼영사, 1980), 17쪽.

37)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만주·러시아」,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6, 2009, 133쪽.

38) 위의 책, 156~157쪽. 십삼도의군의 조직은 도총재 유인석, 창의총재 이범윤, 장의총재 이남기, 도총소참소 우병렬로 이루어졌고 홍범도, 이진령, 안창호 이갑 등이 동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상설은 외교대원이 되었다.

여를 독려하였고, 같은 해 7. 28. 유인석과 이상설이 연명으로 일제에게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에게 연해주로 播遷하여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영도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³⁹⁾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폐하께서 한번 다른 나라에 播遷하여 계신다면 밖으로 세계만방의 공론도 제창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안으로 우리나라의 민심도 고동시킬 수 있으므로 천하의 일을 단연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령으로 파천하시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시옵소서. 신등이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오나 폐하를 보호하고 중흥할 계획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퇴위되었다고는 하지만 고종황제는 여전히 대한제국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신적 구심체였으므로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였다면 독립운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보문서에 의하면 고종은 강제퇴위 후인 1908년 이미 러시아에 망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1909년과 1910년에도 망명시도가 있었다.⁴⁰⁾ 따라서 최소한 고종이 망명정부의 수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십삼도의군 조직에 의한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주도한 유인석은 한말 위정척사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⁴¹⁾ 그는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성리학적 勤王主義에 기초하여 서양의 입헌정치에 반대하였고 평등과 자유에 의한 무질서보다 賢愚·貴賤·淸濁 등에 의한 차별을 통한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적 바탕위에 중국이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을 실시하자 대통령제를 두면 권력다툼으로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어 나라가 혼란

39) 윤병석, 위의 책(1984), 129~130쪽.

40) 박민영, 위의 글, 375~376쪽.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73~74, 105, 250쪽.

41) 유인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래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시기 이미 요동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는 망명하였던 요동과 연해주 등지에서 항약을 실시하는 등 유교국가의 재건을 추진하였다. 최부순, 「의암 유인석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만주·노령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울곡사상연구』 제2집(1995), 574쪽.

해지고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²⁾ 반면 함께 상소를 올린 이상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국민주권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종황제의 망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당시 군주제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2. 신한혁명당의 고종황제 추대

군주제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던 십삼도의군의 구상은 1915년 중국에서 결성된 ‘新韓革命黨’의 활동으로 이어진다. 국권침탈 이후 러시아의 한인들은 합방조약 반대투쟁으로 성명회를 조직하고 1910.8.23. 한인대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반대하는 ‘성명회 선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반대결의를 알리는 전문을 발송하였다.⁴³⁾ 이어서 1911.12. 한인의 자치조직으로서 勸業會를 설립하고 교육과 언론사업, 상공업 등의 실업권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⁴⁴⁾ 권업회는 계몽사업 이외에 침체되었던 의병활동의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하였고 이는 1914년 독립전쟁을 시행하기 위한 ‘大韓光復軍政府’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대한광복군정부는 1914년이 러일전쟁 10주년으로 새로운 러일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사시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 등지의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비밀 군사조직으로 이상설, 이동휘, 이동녕, 이종호, 정재관 등이 주축이 되었다. 대표로서 이상설을 正都領으로 선출하여 군무를 통할하게 하였고, 다음 정도령은 이동휘가 맡았다.⁴⁵⁾ 광복군정부는 연해주와 서북간도에 3개의 군구를 설치하여 연해주를 제1군구, 북간도를 제2군구, 서간도를 제3군구로 구성하

42) 유한철, 「1910년대 유인석의 사상변화와 성격-宇宙問答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1995), 26~28쪽.

43) 각국 정부에 보낸 전문 및 성명회 선언서에는 일관되게 합병이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이 주장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병석, 위의 책(1984), 136~144쪽.

44) 강영심,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4~5쪽.

45) 뒤바보, 「俄領實記」, 『독립신문(상해판)』 1920.3.30. 제1면,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1, 독립신문, 국사편찬위원회, 2005.

였고, 1915.5.8. 군구사령관과 각급 군직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는 권업회가 러시아의 탄압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북간도로 이전하였으나 결국 그곳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⁴⁶⁾ 이에 따라 이동휘, 이상설 등은 서북간도와 상해 등지로 진출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을 모색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가 비록 ‘軍政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는 하나 ‘정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군정부는 원래 1906년 작성된 손문의 “中國同盟會革命方略”에서 구체화된 개념이다. 손문은 혁명방략에서 혁명의 단계를 “軍法之治, 約法之治, 憲法之治”로 나누고 軍法之治의 시기에는 인민들이 만주에 대하여 봉기를 하여 만주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와 인민은 다 함께 그 정치를 군법하에서 이를 받들고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적을 쳐부수고 인민은 군대의 수요를 공급하여 오로지 그 안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군이 만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점령한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⁴⁷⁾ 따라서 군정부란 독립전쟁시 점령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임시로 행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대한광복군정부는 독립한 이후의 완전한 정부를 대신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군정부의 체제만을 가지고 군주제와 공화제 등 구체적인 정치체제의 지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한광복군정부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 ‘신한혁명당’이다. 독립운동진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양에서 중일전쟁 및 독일전쟁이 이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들은 유럽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중국이 독일과 연합하여 일본과 전쟁을 하면 그때가 항일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1915. 3. 상해에서 박은식, 신규식, 이상설, 유동열, 이춘일, 유홍렬 등이 모여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국내외를 연결하여 독립전쟁을 추진하려 하였다. 신한혁

46) 윤병석, 「이동휘의 망명활동과 대한광복군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1997), 106~107쪽.

47) 孫文, 『國父全集』 第一冊(中華民國各界紀念國父百年誕辰籌備委員會, 1965), 302쪽.

명당은 본부를 중국 북경에 설치하고 당수로 고종황제를 추대하였으며, 본부장에 이상설을 추대하였다. 조직으로 재정부, 교통부, 외교부 등의 부서를 두고 이춘일, 유동렬, 성낙형을 각 부장에 임명하였고 상해와 장춘, 연길 등에 지부를 설치하여 지부장을 임명하였다.⁴⁸⁾

신한혁명당의 주된 활동은 유사시 독립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수행을 위한 군비를 정비해두는 것과 함께 외교적 측면에서 독일의 보증하에 중국과 군사원조동맹인 “中韓誼訪條約”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한국에 혁명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군비와 무기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밀약으로 그 국제적 효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독일정부의 보증하에 한국과 중국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조약안은 총 21개조로 되어 있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당사자는 양국의 원수인 중화민국대총통과 한국의 원수로서(제1조), 대독일황제가 이를 연대보증하도록 규정되었다(제4조). 중국은 韓國革命時에 군기와 재력을 방조하고 군관을 파견하며(제7조), 한국이 재정과 군기가 부족하여 보증인인 독일에 청구할 경우 중국은 이를 권고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8조). 이 경우 이후 한국혁명이 성공하면 독일은 國債로서 무이자 30년을 조건으로 상환받도록 하였다(제9조). 그밖에 한국혁명의 성공시 중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규정(제11조)하여 독립전쟁시의 원조를 빌미로 중국이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였고, 실패하는 경우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제17조)하여 실패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⁴⁹⁾

신한혁명당은 외교부장인 성낙형에게 독일 및 중국과 교섭하여 위 조약을 체결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신한혁명당의 당수이자 미래에 세워질 한국 정부의 원수로 추대된 고종황제에게 밀약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을 밀지를 받기 위해 조약안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성낙형은 국내에 잠입하여 신한혁명당의 독립운동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고종황제에게 전달하였고 직접 알현하여 조약안을 보이고 체결의 위임을 위한 밀지

48) 윤병석, 위의 책(2009), 190~191쪽.

49) 조약의 주요내용과 원문은 강영심, 위의 글, 126~127쪽에 의하였음.

를 받기 전에 일제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다.⁵⁰⁾ 그 결과 조약체결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더구나 1차 세계대전에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승전국 쪽에 가담함으로써 신한혁명당은 더 이상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대한광복군정부와 신한혁명당은 종래 볼 수 없었던 정부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체제의 발전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전자를 최초의 망명정부로, 후자를 그와 표리를 이루는 혁명정당으로서 신한혁명당을 광복군정부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⁵¹⁾도 존재하나 이와 같이 불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신한혁명당에서 국내동포에게 주는 경각서 중에 “비밀무형의 공고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사람들을 규합할 방법이라고 제시하여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정부의 조직을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나⁵²⁾ 이를 대한광복군정부로 볼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고종황제를 당수로 추대하였고 중한의 방조약체결과정에서 고종황제를 국가원수로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한혁명당은 ‘고종 중심의 정부’와 ‘혁명정당’의 체제를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한혁명당이 고종황제를 당수와 국가원수로 추대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서 원세개가 세력을 확장할 것이 예상되고 독일도 제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공화정체보다 제정이 더 유리하다고 본 점이 이유로 제시된다.⁵³⁾ 독립을 위해 유리하다는 이유로 군주제를 지지하였다는 것은 이 때까지 군주제와 공화제가 선택가능한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⁵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통해 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아직까지 공화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50) 위의 글, 129~130쪽.

51) 윤병석, 위의 책(2009), 196~197쪽.

52) 강영심, 위의 글, 134~135쪽.

53) 윤병석, 위의 책(1984), 166쪽.

54) 김희곤, 「신해혁명과 한국 독립운동」, 『중국근현대사연구』 53(2012), 11쪽.

있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政府’와 ‘革命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시기 독립운동진영에 중국혁명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것이 이민족인 만주족의 지배에 대항하는 反滿혁명이었으며 나아가 군주정체를 전복시키는 공화혁명이었던 점에서,⁵⁶⁾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향후 활동에서 이중혁명으로서의 ‘反日共和革命’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중국혁명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근왕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존재하였으며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군주제를 지지하며 망명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⁵⁷⁾

IV. 공화제 정치체제의 도입

1.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무형국가론

1910년을 전후하여 미국 대한인국민회에서 정부수립이 논의되었다. 우선 신한민보 주필 박용만은 ‘무형국가론’을 통해 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만일 독립전쟁을 시작하자면 먼저 우리의 사회를 변하여 정치기관을 만들

55) 예를 들면 박은식의 경우 국내활동기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지향하였으며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의 언론활동도 혁명정부인 중화민국을 지지하고 원세개를 비판하면서도 민권과 민치주의에 기초한 원론적인 것에 그쳤고 손문이나 혁명파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1914년 이후 강유위와의 교류를 통해 군주제를 지지하는 ‘國是報’에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한혁명당 참여 당시 군주제에 대한 지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배경한,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21(2003), 265~267쪽. 배경한은 박은식이 공화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근거로 대동단결선언에의 참여나 1922.4.에 작성한 북벽운동에 대한 반대논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신한혁명당 활동 이후에 비로소 공화주의를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

56) 손문은 동맹회혁명방략에서 중국혁명을 國民革命으로 규정하고 이는 만주족의 정부를 전복하고 한족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며 이로써 中華를 회복하고 民國을 수립하는 것이라 하였다. 손문, 위의 책, 301쪽.

57) 예를 들면 유인석의 문인 또는 동료의병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1919. 3. 결성한 대한독립단은 유교적 군주제를 지향하며 1920년 광복군사령부로 개편될 때까지 무장투쟁을 계속하였다.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일조각, 1997), 46~50쪽.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의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우리 국민을 일체로 정치적 제도로 조직하여 한 자치하는 실력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줄 믿으며, 이것을 반드시 외국에 있는 동포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줄 아노니 (...) 우리 조선국민의 단체로 마땅히 사회적 제도를 변하여 정치적 제도로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정치적 조직의 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한두가지 목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곧 천만가지 일을 다 주장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일반 동종을 다 포함하니 여기에 당하여는 입회출회도 없고 청원서 보증인도 없고 다만 일반 조선민족을 한 헌법 아래 관할하여 한 무형국가를 설립하자 함”⁵⁸⁾

이와 같이 외국의 동포로부터 조직하여 정치적 제도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기존의 대한제국과는 별도로 해외에 정부를 수립하고 이로 하여금 해외 동포들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박용만의 무형국가론은 곧바로 임시정부의 건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무형국가론에는 군주를 옹립하는 부분이 없어 공화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무형국가론은 출발점에서 외국동포들의 ‘자치’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와 국민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제도로써 만들어지는 ‘무형’한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으므로 완전한 정부수립을 위한 주장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실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예를 들면 미주 국민회가 “국가의 주권이 없어진 후에 능연히 가정부를 대표”하고 있다⁵⁹⁾고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국민회 중앙총회의 조직을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와 같이 일반적인 단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기에 재무, 학무, 법무, 외교원이 추가되어 있어 그 자체로 정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⁶⁰⁾ 따라서 국민회는 정부라기보다는 미주한인들의 자치활동을

58) 『신한민보』 1911.4.5.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일」.

59) 『신한민보』 1914.2.26.

위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를 임시정부 수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실제 공화제정부의 구상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시기 모든 국민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정부수립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그것이 군주가 없는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되었던 점에서 공화제정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 이와 같은 공화제에 대한 지향이 가능하였던 것은 이미 그 이전 국민주권론이 주장되었고, 논의되고 있는 장소가 공화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주 동포들에게 국민주권과 공화제는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고종의 퇴위와 국권침탈 이후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할 때 자연스럽게 공화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한광복회의 공화혁명론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군주제 폐지와 공화제의 수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구 공화제에 대한 지식을 넘어 새로운 사건과 이로 인한 충격이 존재하여야 하였다. 공화제의 수립은 주권 소재를 변경하는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중국에서는 1911년 10월 호북성 무창에서 신군의 반청봉기에서 시작되어 1912년 4월 원세개정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일대 정치변혁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무창봉기에 뒤이은各省의 독립, 중화민국임시정부의 수립, 청황제의 퇴위에 이르는 일련의 상황 속에 滿清왕조의 이민족 지배가 종식되었을 뿐 아니라 2천여년에 걸친 전통적 황제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하였다.⁶¹⁾ 당시 개화지식인들은 1905년 동경에 중

60) 국민회장정,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외무성 기록, 1910.12.9. “대한인국민회의 한일합방 반대투쟁” 경비첩 제165호, 비수 제3402호.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haf&types=&synonym=off&chinessChar=on&levelId=haf_060_0250&position=-1, 최종검색 2017.9.12)를 검색한 것이다.

61) 김형중,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 중국사』 VI(지식산업사, 2011), 119쪽.

국혁명동맹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중국의 혁명세력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고 무창봉기 이후에도 신규식 등 상당수의 한인망명자들이 중국혁명에 참여하여 당시 독립운동진영은 신해혁명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⁶²⁾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진영이 공화제를 수용하는데 신해혁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권침탈을 전후하여 국권회복운동 단체들 중 구체적인 현실개혁론으로 공화제를 주장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신민회의 활동을 조사한 일본측 보고서에 “深意는 韓國으로 하여금 列國保護下에 共和政體의 獨立國으로 함에 目的이 있다”라고 적혀있음을 근거로 신민회가 이상적 국가상으로 공화제를 지향하였다고 보기도 하나,⁶³⁾ 이를 미국의 한인국민회와 관련성에서 지적된 것으로 보고 일본에 의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나 일부 세력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신민회의 공화제 주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⁶⁴⁾ 앞서 살펴본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들에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공화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견해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신민회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단체 중 공화제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대한광복회”가 있다. 대한광복회는 의병출신 舊學 또는 無學者를 중심으로 1913년 결성된 독립군 단체인 풍기광복단과 부호 또는 중산층, 新학 문이수자 중심으로 1915년 결성된 독립군 지원단체인 대구 국권회복단이 통합하여 성립한 무장조직으로, 독립군양성을 목적으로 군자금 모집과 무기구입 및 친일부호의 처단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국내외에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후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를 기다려 국내외에서 일시에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⁶⁶⁾ 이와 같

62) 배경한, 「한국독립운동과 신해혁명」, 『한국근대사연구』 75(2015), 78~85쪽.

63) 이승현, 위의 글, 288쪽.

64) 김도형, 위의 책, 428쪽.

65) 신민회의 입장을 입헌군주제론과 큰 차이는 없으나 공화제의 국민국가를 염두에 두고 쓴 글로 추측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 견해로는 박찬승, 위의 글, 327쪽.

66)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연구』 42(1983), 104~105, 124쪽.

이 대한광복회는 근대적 혁명군사조직으로서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였음이 박상진 등에 대한 보안법 등 위반사건 판결문⁶⁷⁾에 나타난다. 우선 1918. 4. 채기중은 전라남도 자산가들에게 발송할 목적으로 작성한 광복회 명의를 경고문에서 국권회복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충의의 선비를 모아 民國을 조직하고 병사를 기르고 농회를 개장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은 역시 금전이다”라고 하였고,⁶⁸⁾ 김한중의 예심조서를 보면 “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공화정치를 실시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⁶⁹⁾ 마지막으로 황봉에 대한 청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왕이 없기 때문에 이때 마침 좋은 기회를 맞았으니 民國을 조직하고 병사를 양성하고 또 농회를 개관하는데 있어 금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대한광복회는 혁명을 통해 종래의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제의 독립국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⁰⁾

대한광복회가 이와 같이 공화혁명이념을 지향한 것은 총사령관인 박상진의 이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儒家출신으로 일찍부터 한학을 공부하였고 의병장 허위의 문인으로서 의병투쟁에 경제적 후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신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養正義塾 法科를 졸업하고 판사시험에도 합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척사적 경험 위에 신학문을 공부하여 革新儒林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의병과 애국계몽주의 운동의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⁷¹⁾ 박상진은 1911년 중국을 방문하여 공화정체인 중화민국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중국혁명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화정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귀국길에 만주에 있는 이상룡, 김동삼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혁명수행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공화혁명이론을 정립하였다.⁷²⁾ 그는

67)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대정8년(1919) 9.26. 선고 판결 형공 제168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673~714쪽.

68) 위의 책, 679쪽.

69) 위의 책, 685쪽.

70) 이상의 판결문 인용과 설명은 박영석, 「대한광복회연구-이념과 투쟁방략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1997), 161~163쪽에 의하였다.

71) 조동걸, 위의 글, 104쪽.

72) 박영석, 위의 글, 159~160쪽.

1917년 “중국에 혁명당이 생겼을 때 이를 시찰하러 가는” 등⁷³⁾ 중국혁명의 추세를 주시하면서 동지들에게 “세계 각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선에도 혁명을 할 수 있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⁷⁴⁾ 이에 의하면 대한광복회의 이념이 중국의 공화혁명을 조선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15년 국내에 중국혁명의 영향으로 공화혁명을 표방하는 무장혁명단체가 출현한 것을 보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도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이 이즈음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대동단결선언의 공화정부수립론

국민주권론을 기초로 공화주의를 채택한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서였다. 이 선언은 해외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신규식, 조소앙, 박용만, 박은식, 신채호, 윤세복, 조성환 등 14인이 발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재미동포 이외에 대부분 중국에서 활약하던 이들로서 그 이전 대종교, 동제사, 신한혁명당에 참여하는 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⁷⁵⁾ 독립운동진영 내부적으로는 신한혁명당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1917년 이상설이 작고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2월 혁명과 미국의 대독선전포고 그리고 원세개 정권의 붕괴와 광둥호법정부의 연합군 합세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⁷⁶⁾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나온 것이 바로 대동단결선언이다.

이 선언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게 보면 ‘주권상속의 대의’와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첫 부분 주권상속에 관한 부분이다.

73) 위의 책, 700쪽.

74) 독립운동사자료집 11, 688쪽.

75)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 『국민대학교 한국학논총』 10(1987), 135쪽.

76) 위의 글, 142~143쪽.

“유희황제가 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吾人同志가 三寶를 계승한 8월 29일 이니 其間에 瞬間도 停息이 無함이다. 吾人同志는 完全한 相續者니 彼 帝權消滅의 時가 卽 民權發生의 時요 舊韓最終의 一日은 卽 新韓最終의 一日이니. 何以故오. 我韓은 無始以來로 韓人의 韓이오, 非韓人의 韓이 아니라. 韓人間의 主權授受난 歷史上 不文法의 國憲이오, 非韓人에게 主權讓與난 根本的 無效요, 韓國民性의 絶對不許하는 바이라. 故로 庚戌年 유희황제의 主權拋棄는 卽 我國民同志에 대한 默示的 禪位니 我同志는 當연히 三寶를 繼承하여 統治할 特權이 있고 또 大統을 相續할 義務가 有하다”⁷⁷⁾

이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으로서 군주가 함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군주의 권한은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그 통치권이 소멸하면 바로 본래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시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기구를 만들고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과 점령은 사실상의 강제에 의한 것일 뿐 이로써 우리 국민의 주권이 사라지거나 양도될 수 없다. 한국인들이 공동체로서 존속하는 한 주권은 유지되며, 일제 강점기는 일제의 불법적인 점령이라는 일시적인 사고로 통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 상황일 뿐이다. 이러한 대동단결선언의 주권과 국가, 국민에 대한 인식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국민주권론과 주권의 소재 그리고 정부의 지위를 주장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대동단결선언의 국민주권론은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선언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제의의 강령 7가지에서 “一 해외각지에 현존한 단체의 大小隱顯을 막론하고 糾合統一하여 惟一無二한 最高機關을 조직할 것”과 “三 大憲을 제정하여 民情에 適合한 法治를 실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1조의 최고기관은 대헌의 제정과 결합하여 보면 정부의 수립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은 국권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

77) 인용은 위 글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선언서에 의하였다.

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구체적 실천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언이 국내외에 전달되어 회답을 요청하였으나 적극적인 찬동표시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화제 정부수립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단결선언은 이전에 발전해왔던 국민주권론을 공화제와 결합하여 국권침탈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부건설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한 큰 의의가 있다.

V. 결론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으로서 군주의 강력한 통치권을 중심으로 대내외적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905년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치,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등을 거치며 대내외적인 통치권을 상실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마침내 1910년 강제병합으로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진영은 국권회복을 위해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동이념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주와 대비되는 ‘국민’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주목하여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였다.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인 세력들 중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근왕주의자들은 십삼도의군이나 신한혁명당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강제병합 이후 미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고, 이어 국내외에서 중국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대한광복회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화제의 흐

78) 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표시도 거의 없었고, 이는 대동단결선언이 북벽주의를 주장해오던 유인석과 이상설이 모두 작고한 뒤의 시점에서 나왔고 당시 독립운동 진영의 새로운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로 박찬승, 위의 글, 334쪽.

름은 해외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대동단결선언’에서 이론적, 정치적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오랜 기간 王政체제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군주제 폐지와 공화제 정치체제 건립으로 의견을 모으는 크나 큰 변화가 아무런 진통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상당기간 군주를 중심으로 국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소위 복벽주의 세력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1910년대를 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제의 불법강점과 국권회복이 주된 주장이었던 상황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독립의 도모는 현실적, 이론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독립된 대한에서 공화제 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권회복을 넘어 주권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변경되는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제로 형성되고 줄곧 유지되었던 것은 이 시기 이전 이미 각 지역 독립운동진영의 다수가 공화제 정치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곧 주권소재변경의 이론적 변화에 대한 일반적 동의 역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이후 독립운동 자체를 ‘혁명운동’으로 명명한 많은 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운동진영의 세대교체와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 그리고 미주 동포들의 공화제 정치체제의 수용 등이 1917년 이후 공화제 정치체제가 독립운동진영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된 주요한 요인들이었고 이들은 주권소재의 변경을 의미하는 혁명론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79) 예를 들면 ‘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 創立 및 宣言書(1926.10.28)’, ‘한국독립당 黨義·黨綱’(1930.1.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국가편찬위원회, 2009), 3~5, 21쪽.

■ 참고문헌

-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대정8년(1919) 9.26. 선고 판결 형공 제168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국민회장정,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의무성 기록, 1910.12.9. “대한인국민회의 한일합방 반대투쟁” 『경비첩』 제165호, 비수 제3402호.
- 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 創立 및 宣言書(1926.10.28.), 한국독립당 黨義·黨綱(1930.1.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3, 국사편찬위원회, 2009.
- 민중목, 「聞見事件」, 허동현 편,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12권, 국학자료원, 1999.
-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 『소양선생문집』 하, 삼균학회, 1979.
- 孫文, 『國父全集』 第一冊, 中華民國各界紀念國父百年誕辰籌備委員會, 1965.
- 유치형, 『憲法』(復刊판), 아세아문화사, 1981.
- 최한기, 「地毯典要」, 『增補 明南樓叢書』 四,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권 8.
- 『대한매일신문』.
- 『독립신문』(상해판).
- 『신한민보』.
- 『漢城旬報』.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삼영사, 1980.
- _____,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 _____, 『학설판례 헌법학』 상, 박영사, 2009.
-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9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 신우철, 『비교헌법사』, 법문사, 2008.
-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1.
- 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 _____,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 만주·러시아」,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6, 2009.
-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 한태연 외 4인, 『한국헌법사』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강영심,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 國分典子, 「俞致衡과 穗積八束 - 한일초기헌법론의 비교」, 『법사학연구』 제23호, 2001.

- 김기승, 「조소앙의 사상적 변천과정」, 『한국사학보』 3·4, 1998.
- 김형중,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 중국사』 VI, 지식산업사, 2011.
- 김희곤, 「신해혁명과 한국 독립운동」, 『중국근현대사연구』 53, 2012.
- 박민영, 「국치 전후 이상설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2007.
- 박영석, 「대한광복회연구 - 이념과 투쟁방략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 2008.
- 박현모,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2007.
- 배경한, 「중국망명시기(1910~1925) 박은식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21, 2003.
- _____, 「한국독립운동과 신해혁명」, 『한국근대사연구』 75, 2015.
-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40(5), 2006.
- 유한철, 「1910년대 유인석의 사상변화와 성격-宇宙問答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 윤병석, 「이상설의 遺文과 이준·장인환·전명운의 의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 _____, 「이동휘의 망명활동과 대한광복군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 이상훈,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 이념」,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4호, 2012.
- 이승현, 「신민회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김기승 외 6인, 『국가건설사상』 II, 인간사랑, 2006.
- 이현환,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31, 2010.
-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연구』 42, 1983.
- _____,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 『국민대학교 한국학논총』 10, 1987
- 최부순, 「의암 유인석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 만주·노령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 『울곡사상연구』 제2집, 1995.
-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Abstract>

The Theory of political system in Korean after 1910.

Chon, Jong-Ik*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Korean Empire lost its diplomatic rights in 1905, and in 1907 it passed through the desertion of King Gojong and the dismantling of the army. The empire could not exercise its governmental power in practice. Finally, in 1910, Japan took its sovereignty. In order to recover the nation, the independence movement camp made effort to make new movement ideology and direction to cope with such situation. As a result, it focused on the new status and role of the 'people' in contrast to the monarch and accepted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Among the forces that accepted the principle of poeple's sovereignty, the traditional monarchists who did not deny the monarchy prope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exile government centering on the Emperor Gojong. In the meantime, after 1910, it was claimed by independent movement groups 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to establish the republican government. In order to argue that the republican political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the revolutionary theory that the sovereignty should transferred from the monarch to the people was needed beyond the simpl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They paid much attention to the 1911 Revolution in China and its theory.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revolution, republic, monarchy, people's sovereignty, exile
government